

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(안) 동의안

의안 번호	30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3월 3일

제 출 자 : 서 대 문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·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「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」의 운영 규약의 세부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을 하고자 보완한 규약 개정(안)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, 제15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참가현황 : 53개 지방자치단체(2020. 11월 현재)

3. 규약 개정 주요내용

- 가. 감사신설,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마련, 임원의 역할 명기(제4조 임원)
- 나. 임원임기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(제5조 임원의 임기)
- 다. 실무협의회의 세부 조항 정비(제11조 실무협의회 등)
- 라. 경비부담 및 사용에 대한 세부 조항 정비(제12조 경비부담)
- 마. 회계 보고 및 결산 조항 정비(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)
- 바. 운영세칙 조항 정비(제15조 운영세칙)
- 사. 별지 서식 추가(가입신청서 및 위임장)
- 아. 회원도시 현황 수정(신규가입도시 반영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~ 제158조
 - 2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5조 ~ 제101조
- 나. 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: 별첨

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참고자료

□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(이하 협의회)추진배경

- 지방분권과 권한이양에 따른 분야별 지방정부 간 정책 의견수렴
 -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부-지자체 합동회의(2017.9.30.)
- 범부처와 연관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·지방 간 소통 증가
 - 온종일돌봄 등
- 민생분야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 증가
 - 혁신교육지구, 행복교육지구 등 교육청-지자체 협력사업 등

□ 협의회 설립 목적

- 중앙(교육부)과 지방정부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 촉진
- 교육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고,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
-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, 교육기관과 협력 도모

□ 운영방향

- 중앙(교육부)과 지방 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 촉진
- 일반자치(지자체)와 교육자치(교육청) 간 협업을 통한 지역교육 혁신
- 학교와 지역사회협력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

□ 협의회 성격

-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행정협의회

□ 협의회 주요기능

-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, 연구, 분석
-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
-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교육부, 시·도 교육청 및 학교 간의 협의조정

□ 추진사업

- 국가 교육의제에 대한 지역화(localization) 사업모델 개발
 - ※ 예시: 온종일 돌봄체계,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
- 지역 교육현안을 반영한 교육의제 발굴 및 공론화
- 광역별 협의회를 통한 지역별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, 백서발간
- 혁신교육 지방정부 최고지도자 연수 및 실무자 워크숍 개최

□ 혁신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유

- ‘혁신교육’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은 사회흐름과 전국의 혁신교육지구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여러 대안명칭(다행복, 교육혁신, 행복 등)을 검토하였으나,
- 지방정부가 중앙 및 교육자치기관과 협업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혁신교육이라는 용어가 협의회와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임

□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현황

- 서대문구 가입일 : 2018. 3. 31. (창립총회)
- 가입 지방정부 현황 : 총 59개 기초지방자치단체(2021.2.17. 현재)
 - ※ 개정 규약상 53개 기초지방자치단체(2020.11.17. 기준)
- 제4기 임원단 현황 (임기 : 2020.7.16.~2021.6.30. , 1년)

직 위	자치단체명	단체장명	비 고
회 장	경기 오산시	곽 상 욱	
수석부회장	서울 송파구	박 성 수	
부회장	서울 은평구	김 미 경	
	경기 시흥시	임 병 택	
	충남 당진시	김 홍 장	
	전남 순천시	허 석	
	강원 홍천군	허 필 홍	
사무총장	부산시 연제구	이 성 문	
감사	충남 공주시	김 정 섭	

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 현황

□ 회원도시 현황: 5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(가입률 32.6%)

※ 전국 혁신교육 사업 운영 기초지자체 181개 /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 _ 80.1%

(2021년 2월 17일 현재, 지방자치단체 건제순)

지 역	지 방 자 치 단 체 명	비 고
서 울	종로구, 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	24
부 산	북구, 연제구, 금정구	3
인 천	미추홀구	1
광 주	-	0
대 전	유성구, 대덕구	2
울 산	중구	1
경 기	수원시, 고양시, 성남시, 화성시, 안산시, 안양시, 시흥시, 파주시, 의정부시, 김포시, 광명시, 오산시, 이천시, 구리시, 안성시, 여주시, 동두천시	17
강 원	홍천군	1
충 북	보은군	1
충 남	공주시, 논산시, 당진시, 서천군	4
전 남	여주시, 순천시, 곡성군, 구례군, 영암군	5

※ 2020년도 신규가입 : 경기 파주시, 부산 금정구, 경기 안성시, 전남 영암군, 경기 동두천시, 충남 서천군
 2021년도 신규가입 : 대전 유성구, 경기 이천시, 경기 성남시, 2021년도 탈퇴 : 광주 서구

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

2018. 3. 31 제정

2020. 11. 17 개정

제1조 [목적]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·군·구(이하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,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[기능]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.

1.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
2.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3.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, 연구,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
4.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, 시·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
5.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
6.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 [구성] 협의회는 “별표”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, 회원은 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된다.

제4조 [임원]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, 수석부회장 1명,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총장 1명, 감사 1명을 둔다. <개정 2020. 11. 17.>

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, 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. <개정 2020. 11. 17.>

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지체가 사무국이 된다. <개정 2020. 11. 17.>

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. <개정 2020. 11. 17.>

제5조 [임원의 임기] ①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0. 11. 17.>

제6조 [총회 및 의결]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.

⑥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·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,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 [의안의 제출]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.

제8조 [안건의 배부]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.

제9조 [의견의 청취]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 [회의결과에 대한 조치]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 [실무협의회 등] ① 회장은 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사항을 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1. 17.>

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협의회장 지자체가 주관한다. <개정 2020. 11. 17.>

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결된 안건 사항을 처리하거나,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. <개정 2020. 11. 17.>

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전체 회원도시에게 공유하며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. <개정 2020. 11. 17.>

제12조 [경비부담] ① 협의회 공동사업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년 따로 정하는 분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11. 17.>

② 납부된 부담금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1. 총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
2. 포럼, 박람회 등 혁신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
3. 혁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
4.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
5.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
6. 그 외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

<개정 2020. 11. 17.>

제13조 [회계보고 및 결산]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협의회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,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0. 11. 17.>

③ 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회계 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. <개정 2020. 11. 17.>

제14조 [규약 개정]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15조 [운영세칙]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한다.

〈개정 2020. 11. 17.〉

제16조 [가입 및 탈퇴]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.

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,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.

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, 협의회에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.

[별표1]

회원도시 현황(53개 기초지방자치단체)

2020. 11월 현재

지 역	지 방 자 치 단 체 명	비 고
서 울	종로구, 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구로구, 금천구, 영등포구, 동작구, 관악구, 서초구, 강남구, 송파구, 강동구	24
부 산	북구, 연제구, 금정구	3
인 천	미추홀구	1
광 주	서구	1
대 전	대덕구	1
울 산	중구	1
경 기	수원시, 고양시, 안산시, 안양시, 화성시, 의정부시, 시흥시, 파주시, 김포시, 광명시, 오산시, 구리시, 여주시	13
강 원	홍천군	1
충 북	보은군	1
충 남	공주시, 논산시, 당진시	3
전 남	여수시, 순천시, 곡성군, 구례군	4

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가입신청서

아래와 같이 가입을 신청합니다.

구분	신청내용		
기관 현황	자치단체명	시 · 도명	
	기관주소		
	단체장성명		
	교육담당부서	국	과(사업소)
	과장 ○○○	○○팀장 ○○○	담당 ○○○
	010-0000-000	010-0000-000	010-0000-000
	abcd@korea.kr	abcd@korea.kr	abcd@korea.kr
학교 현황	총인구수	0,000,000명	
	지역교육지원청	○○교육지원청	
	초등학교	00개	0,000명
	중학교	00개	0,000명
	고등학교	00개	0,000명
	계	000개	00,000명
	(기준일 :)		
재정 규모	총예산규모	000,000백만원	
	교육경비보조금	000,000백만원	
(기준일 :)			

20 년 월 일

△△시장(군수·구청장) ○○○

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귀하

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위임장

1. 위임받는 자

성명		연락처	
소속		직급(직위)	

2. 위임하는 자

성명		연락처	
소속		직급(직위)	

3. 위임사유

--

본인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6조제6항에 의거 정기총회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위임자 △△시장(군수·구청장) ○○○ (인)

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귀하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 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52조(행정협회의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 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
제153조(협의회의 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55조(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)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, 의견 개진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56조(협의사항의 조정)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(調整) 요청을 하면 시·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되는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
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
제157조(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)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
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21. 1. 5.] [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 1. 5., 타법개정]

제95조(행정협의회 구성 기준)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, 특수행정수요의 충족, 공공시설의 공동설치, 행정정보의 교환, 행정·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·도로 구성한다.

제96조(협의회 사무소의 위치)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(이하 "중심지방자치단체"라 한다)에 둔다.

제97조(협의회 구성 보고)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
3. 구성목적
4. 구성일자
5. 협의회의 규약 사본

제98조(회장)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.

제99조(회의)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.

② 정기회는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·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·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
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.

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·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·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

제100조(자문위원)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, 지방의회 의원,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제101조(운영 규정)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., 2013.3.23., 2014.11.19., 2017.7.26.>